코로나 19 극복, 고성군과 함께

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

FAQ

고성군

01

Q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?

·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. 1. 6.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

Q 지원제외 대상은?

·외국인, 재외국민(단,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중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)
·사망자, 관외 전출자는 지원 제외
·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

Q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은?

·2021년 1월 6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

Q 지원금은 얼마인지?

·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, 1인당 10만원이 지급
(주민등록세대 단위 지급)

고성군

02

Q 지원방법은?

· 고성사랑상품권(종이류)으로 지급

Q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?

· 신분증, 신청서

· 결혼이민자가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전부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, 세대주 신분증,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를 추가 제출

· 대리신청시 위임장, 신분증(위임인, 대리인 모두) 필요

Q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?

· 가구단위 지급이 원칙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
-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를 동일가구로 봄
- 그 외 세대원(동거인 포함)은 별도로 신청하여 개인별 지급

(단,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경우 가구 단위지급도 가능)

고성군

03

Q 시설 생활자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은?

- 사회복지시설 생활자, 기숙사 생활자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(기관장) 또는 관계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

Q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, 동거인 등 신청 방법은?

- 만 19세 미만의 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도 신청 가능

Q 대리신청을 위한 위임인, 대리인의 범위는?

- 주민등록상 가구전부를 대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위임인은 세대주만 가능
-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이외 세대원(동거인 포함)은 대리 신청시 각각 개인별 위임하여야 함

Q 신분증의 범위는?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주민등록발급확인서
-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의 경우, 학생증(사진, 주민등록번호 성명, 학교장 날인 기재되어야 함), 신분확인증명서(학교장 직인·날인)

고성군

Q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?

· 고성사랑상품권(종이류):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가능
※ 사용불가업종: 온라인 쇼핑, 유흥 및 사행업, 탑마트,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
※ 공공요금 납부 불가

Q 고성사랑상품권을 분실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
· 고성사랑상품권은 교환·환불·재발급 불가능

Q 고성사랑상품권의 사용기한은?

·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가능

Q 해외체류로 인하여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·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 고성형 재난지원금도 기부가 가능합니까?

· 신청한 읍면사무소의 복지부서로 기부 가능하며, 기부금영수증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발급 가능

Q 2021년 1월 7일 이후 사망, 출생, 전출입, 가구분리 등 가구원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은?

· 2021년 1월 6일 기준 가구원 수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출생: '21. 1. 6. 이전 출생자는 가구원수 포함
'21 . 1. 7.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자도 가구원수 포함
(출생신고 하여야 함)

② 사망: 사망자는 제외

③ 전입: '21. 1. 7. 이후 전입자는 제외

④ 전출: 관외 전출자 지원 제외

⑤ 가구 분리: '21. 1. 7. 이후 세대 분리 미 인정(1. 6. 가구 기준)

Q 1. 7. 이후 신청마감일 이내 재전입한 경우?

· 2021. 1. 6.(기준일)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. 따라서 1. 7. 이후 관외전출후 신청마감일 이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